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위임 및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안 제3조제2항)

-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

나.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4조)

-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 도로점용료 반환 조항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4423('17. 5.11.)]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주민복지과-27984('17. 5.17.)]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17. 6. 1. ~ '17. 6. 2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로, “각호에”를 “각 호에”로,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을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의 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징수)”를 “(점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호 ---------- 각 호에 ----------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 영 ---------- --------.
<신 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전액을 면제한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분의1을 감면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